

투 자 일 임 계 약 서

DAWON
다원자산운용

_____ (이하 "고객" 이라 한다)와 다원자산운용(주)(이하 "회사"라 한다)은 "고객"의 유가증권 및 유가증권 투자자금(이하 "계약자산" 이라 한다)의 운용에 대해 고객이 회사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회사는 고객의 계약자산에 대해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은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에 대하여 투자일임수수료 및 성과수수료를 지급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 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① "투자일임"이란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② "계좌"라 함은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 ③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④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자산 및 해당 자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 ⑤ "관계인수인"이란 회사와 같은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 ⑥ "이해관계인"이란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계열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이해관계인을 말한다.

제 3 조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투자일임을 한다.
-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퇴직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여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은 제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4 조 (투자일임대상) 회사가 고객의 계약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그 투자일임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대상으로 한다.

- ① 채무증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어음증권 등
- ② 지분증권 :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그 밖에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 ③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 ④ 투자계약증권
- ⑤ 증권예탁증권(ADR, EDR 등)
- ⑥ 동 유가증권과 관련된 기타 투자대상물
- ⑦ 기타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유가증권

제 5 조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서비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장, 단기 투자전략 수립 및 자산배분에 관한 투자일임
- ②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구성 및 분석에 관한 투자일임
- ③ 유가증권투자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등의 투자일임
- ④ 기타 계약자산운용 일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임재산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 등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 받을 수 있다.

-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 2. 공개매수의 응모
 - 3. 유상증자의 청약
 - 4. 전환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서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투자일임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비스의 대가로서 제22조 제3항에 의한 투자일임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 ② 고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투자일임 기본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하되, 계약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이때 지급하는 기본수수료는 계약자산이 아닌 별도의 계좌로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 ③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의 %이며, 계약해지 시에는 선취한 수수료를 일할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수수료의 지급은 제22조 제4항에 명기된 회사의 지정된 계좌번호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 8 조 (성과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성과에 대한 대가로서 제22조 제3항에 의한 성과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한다.
- ② 성과수수료는 계약종료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③ 수수료의 지급은 제22조 제4항에 명기된 회사의 지정된 계좌번호로 입금하기로 한다.

제 9 조 (중도해지수수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 수수료를 별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 ①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②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③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제 10 조 (투자실적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① 투자수익률의 계산

투자수익률은 계약개시일 시점에서의 계약자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산의 수익률로 계산한다. 단, 평가자산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종가로 하되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증권(미 상장된 공모주 등)은 편입단가로 계산한다.

② 미실현 이익의 계상

주식에 있어 배당, 유무상 증자에 의한 배당락이나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이나 증자 분이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락 가격,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한 후 배당 또는 유무상 증자 분을 사전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단, 사전산입이 어려운 경우는 그 금액이 확정된 일자에 사후 정산하기로 한다. 채권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한 후 경과이자 등 미 실현이익은 사전 산입하는 것으로 한다.

③ 평가기준일

투자수익률 계산에 있어서 계약의 중도해지시는 해지효력의 발생일, 계약만료시는 계약 만기일을 평가기준일로 한다.

제 11 조 (회사의 신의성실의무)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고객의 의사 등 사전 파악)

- ①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투자대상자산, 위험선호의 정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계약자산 일임운용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한다.
-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고, 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 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은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의 취득, 처분 등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투자자와 상담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운용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다.
- ⑤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하여야 한다.

제 13 조 (운용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제출) 계약기간 동안 회사는 고객에게 분기 1회 이상 계약자산의 운용계획서와 운용성과 보고서를 서면, FAX, 전자통신 및 기타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단, 고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전문투자자일 경우 상기 조항을 배제할 수 있다.

제 14 조 (비밀유지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투자일임업무 수행 중 제공한 투자일임 서비스의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회사의 투자일임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이용하지 못한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산내용과 관리사항, 손상내용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 15 조 (통지의무)

- ① 고객은 거래금융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그 밖에 회사의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지정된 투자일임 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제22조 제7항에 기재된 주소와 연락처에 문서 또는 전화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달리 지정하여 통지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하여야 한다.

제 16 조 (운용결과의 귀속) 회사가 계약자산을 운용 일임한 결과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 17 조 (회사의 금지사항)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고객으로부터 현금 또는 투자일임 자산의 보관, 위탁을 받는 행위
- ② 고객에게 현금 또는 투자일임 자산을 대여하거나 고객에 대한 제3자의 현금 또는 투자일임자산의 대여를 중개, 주선 대리하는 행위
- ③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
- ④ 투자일임 자산에 관해 고객에게 일정한 이익의 보장 또는 이익의 분할을 약속하거나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 ⑤ 고객의 투자일임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회사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 ⑥ 고객의 이익을 해하면서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⑦ 고객의 투자일임 재산으로 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 재산, 집합투자 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⑧ 고객의 투자일임 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⑨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 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⑩ 투자일임 계약을 위반하여 투자일임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 ⑪ 고객의 투자일임의 범위,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투자일임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 ⑫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 ⑬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 18 조 (회사가 위임 받을 수 없는 행위) 회사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해 고객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수 없다.

- ① 투자일임 계약자산을 위탁하는 증권회사 또는 기타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 ② 투자일임 계약자산을 위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 ③ 투자일임 계약자산으로 소유하는 유가증권의 의결권 기타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 ④ 매매거래보고서를 고객을 배제하고 회사만이 수령하는 행위
- ⑤ 금융기관 등에 거래계좌개설을 대행하는 행위

제 19 조 (계약기간)

- ① 투자일임계약의 유효기간은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 ② 회사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만료일 이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 20 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 ① 고객 또는 회사는 제22조의 계약기간 중에는 이 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 변경되어 계약자산이 변경될 경우 고객은 그에 해당하는 투자일임 수수료를 제7조, 제22조 제3항 및 '<별지>투자일임 수수료 기준'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지급한다.
- ③ 계약을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를 고객이 회사에게 지급한다. 해지수수료는 고객이 해지를 통지하는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 21 조 (계약만료, 해지시의 자산형태) 고객과 회사가 계약을 개시하거나 만료하는 시점에서의 자산 형태는 그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증권으로 한다. 단, 유가증권은 공정한 시세가 있는 투자물에 한정한다.

제 22 조 (계약의 내용) 고객과 회사가 합의한 이 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계약기간: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 ② 계약금액: 금 원
- ③ 상품유형 / 성과수수료

□ 일임계약
1) 투자일임 선취수수료 (계약금액의 %)
2) 기준수익률: %
3) 성과수수료율: %

※성과수수료는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 금액에 성과수수료율을 곱한 금액

④ 회사의 계좌번호 : KB국민은행 400437-01-021956 / 계좌명: 다원자산운용(주)

⑤ 투자일임 담당자의 주요 경력

투자일임 담당자	정 진 옥
주요경력	
2008년 1월 ~ 2016년 2월	삼성증권 Private Banker
2016년 3월 ~ 2021년 10월	다원자산운용 헤지펀드운용본부 본부장
2021년 10월 ~ 현재	다원자산운용 대표이사

⑥ 투자일임재산이 예탁된 금융투자회사:

계좌번호:

⑦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 주 소 :
- 전 화 :
- e-mail :

제 23 조 (관련조항)

-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 ② 제22조 제2항 내지 제3항에 정한 사항의 변경은 고객 또는 회사가 제15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한 후 회사가 이 계약서의 별지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고 그 사본을 고객에게 송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때 회사가 작성한 별지 및 고객에게 송부한 사본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제 24 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지연되는 경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5 조 (청약의 철회)

-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지>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26 조 (위법계약의 해지)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7 조 (계약의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고객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내용을 시정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설정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고객이 회사의 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회사가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 시 회신해 줄 것을 통지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경 내용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상의 지시에 의한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재산을 고객에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계좌 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 (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29 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별지 >

투자일임 수수료율 기준

제 1 조 (목적) 이 기준은 투자일임 업무의 수행에 따른 투자일임 수수료의 계산 기준 및 징수방법, 일임업무 수행에 따른 성과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투자일임 수수료) 투자일임 수수료는 해당 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고객의 투자형태에 따라 다음의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단, 예탁자산의 규모에 따라 고객과 협의할 수 있다.

[표1] 투자일임 선취수수료율

유형	선취수수료율
일임계약	계약자산의 %

제 3 조 (성과수수료) 투자일임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투자자산 계약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과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표2] 성과수수료율

유형	기준수익률	성과보수 수수료율
일임계약	%	수익금액의 %

제 4 조 (계약자산의 평가)

① 계약자산의 평가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계약자산 중 주식은 계약일 전일 해당 자산이 상장된 거래소에서 형성된 증가, 전일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에 형성된 증가로 평가하고 채권은 계약일 전일의 증가 또는 동종채권의 수익률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 1항의 경우 투자일임 계약체결일전 권리락, 배당락 또는 이자락으로 인하여 계약기간중 수령하게 되는 주식, 배당금 또는 이자는 해당자산의 입금(고)일자(의 증가로 산정한 금액 또는 입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 5 조 (투자일임 수수료의 계산)

① 투자일임 수수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계약자산에 제2조에서 정한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중의 증액계약시 추가수수료 산정방법) 투자일임 계약기간 중 계약 자산액이 증가하는 경우의 추가 수수료 계산은 다음의 방식에 의한다.

▶ 추가수수료 = 수정수수료 - 기지불 수수료

▶ 수정수수료 = 최초계약자산 × 해당수수료율 + 추가계약자산증액분 × 해당수수료율 × (잔존계약일수/만기일수)

제 6 조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지수수료) 투자일임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별도의 해지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일부해지의 경우도 함께 적용한다.

제 7 조 (투자일임 수수료의 징수) 고객은 투자일임 계약체결, 계약기간 중에 계약자산의 증액변경, 갱신이 있는 때는 그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 3조 및 제 5조에 의거 산정된 투자일임수수료 전액을 투자일임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8 조 (연체이자) 청약철회로 인해 회사가 이미 받은 수수료를 고객에게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연체되었을 경우 30일 이후부터 반환일까지 CD금리를 적용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다.

